

Vol. 9

2026.09.14

Customs & Trade-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관세법」 일부개정

개정 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재공인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시행일 2026. 8. 11.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개정 이유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시행일 2026. 8. 5.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유가 변동을 운임에 반영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의 유가변동 고시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제1호, 별첨)	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안전운임 운임표(거리·기점별)를 변경함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제2호)	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 운임표(거리별)를 변경함
부대조항 정비 (별표1, 2)	평균 유가 산정(3개월) 시기 및 부대조항 유가연동 기간 오류로 인한 평균 유가 적용 시기를 수정함
전배운송 운임 효율표 추가 (별첨)	터미널 간 전배 운송이 발생하는 경우 운임 지급을 위한 효율표를 추가함
개정된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 시기 규정 (부칙)	유가 변동을 반영한 안전운임 변경

시행일 2026. 8. 1.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공고」 일부개정

개정 이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기존 세이프가드조치를 대체할 철강관세할당(TRQ)을 '26.7.1.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관세할당품목을 수출입공고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별표2」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을 개정하여, EU와 영국의 TRQ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함

시행일 2026. 8. 19.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개정 이유

아르헨티나가 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육 관련 수입금지국으로 분류된 아르헨티나를 수입허용 국가로 재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별표]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중 “마. 가금육”에서 아르헨티나를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에 추가함

시행일 2026. 8. 10.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대상 공급국

중국

(2) 부과 대상 물품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3) HS CODE

2916.12-3000

(4)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11.88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9.53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9.17

(5) 부과기간

- (당초)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 (변경)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

(6)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시행일 2026. 8. 5.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의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안이유

-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
-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관세사 등의 확인·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추가함
채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	채납자의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의 타인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 조정	산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성실신고확인 제도 도입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함
집중관리품목 반출명령 신설	주무부장관 요청 시 세관장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기술 보호 강화	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 등에 포함하고, 관계기관 요청 시 세관장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신고 기한 단축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공항·항만 출입자 정보 요청 근거	마약류 등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입안계획서의 요약본이며, 최종 개정 내용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본계획 (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등 (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와 제출서류, 지정요건 및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기업지원 (안 제13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규제특례 (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절차와 대상 물류관련사업의 범위,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보플랫폼 (안 제26조~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보칙 (안 제28조~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입안계획서의 요약본이며, 최종 개정 내용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이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통계 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함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입안계획서의 요약본이며, 최종 개정 내용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안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프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판정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

주요내용

구분	내용
부과 대상 물품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이고,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 기준]으로 함
적용기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함
덤프방지관세율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93~8.41%로 함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입안계획서의 요약본이며, 최종 개정 내용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입안이유

- 전자지급수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세행정 신뢰도를 제고
-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법과 담보제공생략자 변경신고 방법 및 담보가 있는 체납고지건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 혼선을 제거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전자지급수단 근거 규정 추가 (제16조)	현행 수납 방식으로 사용되는 00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법 구체화 (제36조)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법 및 절차를 현행화하는 등 개선함
담보제공생략자 변경신고 방법 명시 (제40조)	담보제공생략자의 변경신고 방법을 명시함
담보제공업체 체납 시 절차 구체화 (제62조)	체납처분 세관장이 체납자의 성실도와 체납세액 조기정리 유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의 관세충당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입안계획서의 요약본이며, 최종 개정 내용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안이유

- WCO 제76차 HS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분류의견서 개정을 국내에 수용하려는 것

주요내용

구분	내용
HS 해설서 일부 개정	제2309호의 ‘항콕시뒀제’ 함유 사료용 조제품 및 제8705호의 작업기계가 장착된 화물 자동차의 분류 명확화 내용을 신설함
HS 품목분류의견서 신규·추가	채두류 주성분의 과자(제2005.99호), 음료 조제품 조제품(제2106.90호), 항콕시뒀제 함유 사료용 조제품(제2309.90호), 전자담배용 껍(제8543.40호),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제8705.40호) 등 23개 품목을 반영함

※ 본 자료는 관련 법령 입안계획서의 요약본이며, 최종 개정 내용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ubes of aluminium alloy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명	Tubes of aluminium alloys; Qtube Lite; QL01F25-LC00; R.KOREA
물품 설명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배관
HS CODE	변경 전 : 제7608.20-2000호 변경 후 : 제8415.90-0000호
변경 사유	에어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15.90-0000호에 분류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6. 8. 13.

※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선적된 물품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 본 자료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AN - based Oxidized Staple Fib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명	Synthetic acrylic staple fibres
물품 설명	아크릴 섬유의 산화처리 과정에서 화학적 변성이 된 것
HS CODE	변경 전 : 제5503.30-1090호 변경 후 : 제5503.90-0000호
변경 사유	기타의 합성스테이플 섬유에 해당하므로 제5503.90-0000호에 분류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6. 8. 13.

※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선적된 물품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 본 자료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ROSS BEA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명	CROSS BEARING ; S1310
물품 설명	프로펠러샤프트에 장착되는 조인트
HS CODE	변경 전 : 제8708.50-1000호 변경 후 : 제8708.99-9000호
변경 사유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99-9000호에 분류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6. 8. 13.

※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선적된 물품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 본 자료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 링 고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명	Red pepper, crushed; Red Chilli Pepper Seasoned FD; PR.CHNA
물품 설명	건고추를 링 형상으로 자른 것
HS CODE	변경 전 : 제0904.22-0000호 변경 후 : 제0904.21-0000호
변경 사유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고추에 해당하므로 제0904.21-0000호에 분류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6. 8. 13.

※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선적된 물품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 본 자료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등 1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명	①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K's ultra stretch dry sweat pants; 439865(13-26)/05141F001E ②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Kids 히트텍울트라 스트레치 슬림핏트팬츠; 439819(14-03)/05121F005A ③ Boy's trousers; WOLULU KIDS CLIMB PANTS, JWW15394; VIETNAM ④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DS KNIT PANTS; KXU15303; VIETNAM ⑤ Men's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yjamas, knitted; MEN'S PANTS(COOL AIR); MSA2 UH1201A ⑥ Boy's trousers of denim; 인디고뱅크 아동용 긴 청바지; IKTJ6S08; PR.CHNA ⑦ JWA 오버사이즈콤비네이션파자마(L); 445833(13-13)/05371F256A ⑧ Boy's breeches of cotton; CITA64G1; BANGLAD ⑨ Boy's shorts of cotton; CITA64G2; BANGLAD ⑩ Boys' trousers of cotton; CETC422002; MYANMAR ⑪ Boys' trousers of cotton; SITC3T31; MYANMAR ⑫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woven; K's stretch warm lined jogger pants; 442493(14-02)/05121F041B ⑬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UKPV7301
물품 설명	트임이 없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지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등 1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HS CODE	변경 전 : 제6103.43-0000호(①~④), 제6107.99-9000호(⑤), 제6203.42-1000호(⑥), 제6203.42-9000호(⑦~⑪), 제6203.43-0000호(⑫~⑬) 변경 후 : 제6104.63-0000호(①~④), 제6108.92-1000호(⑤), 제6204.62-1000호(⑥), 제6204.62-9000호(⑦~⑪), 제6204.63-0000호(⑫~⑬)
변경 사유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성 또는 소녀용 바지에 해당하므로 제6104.63-0000호(①~④), 제6108.92-1000호(⑤), 제6204.62-1000호(⑥), 제6204.62-9000호(⑦~⑪), 제6204.63-0000호(⑫~⑬)에 분류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026. 8. 13.

※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선적된 물품은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 본 자료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 요약본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1/2)

-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 교육·자격 갖추면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 / 할랄 인증 제조소에 대한 중복 실사 면제, 견본품 반입 절차 공유

CHECK POINT

- ✓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도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를 할랄 슈퍼바이저로 둘 수 있게 됩니다.
- ✓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는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제조소 현장실사가 면제되며, 규정 개정 전에도 공문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는 10월 18일 시행되며, 시행 전 통관된 유통 제품은 유효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B) 및 식약청(BPOM)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B)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2/2)

상세 내용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표시 의무화 시행일(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협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새만금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조기 구축 등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선제적 지정 (1/2)

-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새만금 3·7·8공구 신속 지정 / 건설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과세보류 등 관세행정 원스톱 지원

CHECK POINT

-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6.0km²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총 14.1km²가 운영됩니다.
- ✓ 공장 건설단계부터 제조·수출까지 관세 과세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 입주업체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가 생략되고 특허수수료가 면제되며,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도 생략됩니다.

상세 내용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긴밀히 협력하여 8월 4일자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km²(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를 포함하여 총 14.1km²(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전북 새만금 지역에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태양광 발전, 인공지능(AI) 수소 시티 등 약 9조 원 규모 투자 계획 ('26.2.27 발표)

지난 6월 24일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만나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이 신속하게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기업에 공장(FAB) 건설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 등의 과세보류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제조·가공 등 원스톱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새만금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조기 구축 등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선제적 지정 (2/2)

상세 내용

우선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 시 관련 기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장(FAB) 완공 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제조·가공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금·비용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종합보세사업장)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 생략과 특허수수료 면제로 관리·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어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상담부터 부지 공급, 인허가, 공장 착공·가동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기업 및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히며, “관세청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기에 이끌어낸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사항과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1/2)

- 국표원, 484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CHECK POINT

- ✓ 해외직구 484개 제품 중 94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국내 유통이 차단되었습니다.
- ✓ 부적합률은 19%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5%)보다 높으며,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중 18개가 부적합했습니다.
-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6.6.3. 시행)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상세 내용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484개 제품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9%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28개 제품 중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족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아동용 섬유제품 중 외의류(샌들·우비·모자 등)도 조사한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부적합/조사제품 수) : 18개/20개 (부적합률 90%), 아동용 외의류(부적합/조사제품 수) : 13/33개 (부적합률 39%)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11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2/2)

상세 내용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4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특히,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 LED등기구(부적합/조사제품 수) : 10/22개 (부적합률 45%),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였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26.6.3 시행)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정보 등의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관세청에 통보하여 통관 차단을 요청하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 및 추가 관세 15% 부과 / 업계 영향 파악을 위한 점검회의 조속 개최 및 대미 협의 계획

CHECK POINT

- ✓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와 15% 추가관세가 2026년 1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 ✓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모듈 와트당 0.38달러입니다.
- ✓ 한국은 232조 관세와 MFN 관세를 합해 총 15%가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美 백악관은 8.6일(목)(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 및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작년 7월 개시한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결과이며, 미측은 동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상업성 확보를 통해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자국 산업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동 조치는 2026년 12월 4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❶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최저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 MIP)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이다.

이에 더해 ❷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는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협의를 체결한 한국·일본·EU·대만·스위스 등 국가는 동 232조 관세와 MFN 관세를 합하여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❸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 대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美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승인기업은 투자규모와 건설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해당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 미국내 생산시설 구축(건설, 보수, 증설 등) 계획상 '29.1.20일까지 착공할 것을 약속 필요

2025년도 기준 금번 포고령상 조치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백만불이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3억불로 추산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25.8월)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금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미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미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1/4)

- 인도에 이은 서남아 두 번째 FTA 타결, 최근 타결국 중 최대 시장 / K-소비재·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 및 인프라·산업 협력 확대

CHECK POINT

- ✓ 라면·커피 조제품·조미김·과자류 등 K-소비재 관세가 철폐되어 시장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 ✓ 대(對)방글라데시 1위 수출품인 경유와 CKD 자동차·자동차부품 전 품목의 관세도 철폐됩니다.
- ✓ 주력 수출품과 K-푸드·K-뷰티에 유연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어 일부 역외산 재료를 써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Khandakar Abdul Muktadir)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기존 FTA 구조와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여 사실상 협상을 종료하고, 잔여 기술적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

【주요 경과】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5차례 공식협상('25.8월, '26.1·4·6·7월) 및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원산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3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협상 모멘텀을 이어 왔고, 이번 양국 통상장관 간 후속 회담을 계기로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

【한-방글라데시 CEPA의 의의】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나라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CEPA로서, '73년 수교 이래 53년 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교역을 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8위 인구 대국(약 1.7억 명)으로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의 성장세를 이어 온 방글라데시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도로·전력망 등 높은 인프라 수요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2/4)

상세 내용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졸업을 앞두고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 : GSP)*의 종료 또는 인하에 대비하여,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인하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CEPA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주력 산업인 섬유·의류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을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글라데시는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고도화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성과】

이번 원칙적 타결의 주요 성과는 ①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②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여건 개선, ③ 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상품 자유화율(잠정) : (한국) 품목수81.7%, 수입액97.5%, (방글라데시) 품목수81.4%, 수입액87.5%

< ① 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

방글라데시는 현 정부가 통상 다변화 전략에 따라 타결한 신규 FTA 상대국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다.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시화·산업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시장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기반이 마련되고 양국 간 공급망이 확대되는 한편, 섬유·의류 생산 기반과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교역도 '25년 2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과 및 기업활동 기반 강화 >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K-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관세율 : 라면(53.6%), 커피 조제품(53.6%), 과자류(85.6%), 조미김(53.6%)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3/4)

상세 내용

또한, 대(對)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디젤유)의 관세가 철폐된다. 반조립(CKD)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 화물차) 및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며, 완성차(CBU)에 대해서는 타국 대비 비차별 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활기유, 세탁기 등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對방글라데시 주력 수출품('25) : 석유제품(7.9억불), 살충제(0.5억불), 철강(0.5억불) 등

*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현 관세율) : 경유(6%), 기유(28%), CKD 자동차(53.6~220%), 자동차부품(28%), 리튬이온 배터리(28%), 에어컨(28%), 세탁기(28%), 조미김(53.6%) 등

아울러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우리 주력 수출품과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에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재료·부품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핵심 원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과 수출을 연계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선 농축수산물 전반에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상품 시장개방과 함께, K-콘텐츠(시청각), 이러닝(e-learning),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90여 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콘텐츠·교육·의료·인프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 주요 규범에 합의하여 진출기업의 정보 수집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유명상표 보호 강화와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대비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규 도입하여 방글라데시 진출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두텁게 마련하였다.

< ③ 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방글라데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에너지·전력망,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섬유 등 제조업과 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 있다.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4/4)

상세 내용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등 인프라 연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항만·발전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철강,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설계·시공·엔지니어링 등 사업 참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관세율 : 철강 냉연·열연강판(5~10%), 굴착기·불도저 등(1%)

양측은 또한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섬유·할랄·디지털 전환·에너지·자원·공급망·청정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을 CEPA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고도화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연계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 7천만 명의 유망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가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및 현지 일정】

산업부는 잔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기 위한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CEPA 원칙적 타결 전날인 8월 3일(월) 타리크 라흐만 총리,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장(BIDA)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CEP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시장·규제 동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점검하였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고] 美 IEEPA 상호관세는 끝났지만, Section 301 추가관세가 시작됐다 (1/3)

CHECK POINT

- ✓ 2026년 7월 24일부터 IEEPA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Section 301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 한국은 12.5% 그룹이나, 일반관세(Column 1)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조정되어 일반관세가 12.5% 이상이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Section 232 적용 품목, 특정 의약품·반도체·민간항공기 등은 제외되므로 자사 품목의 예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2026년 7월 24일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이 다시 한번 크게 전환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IEEPA 관세가 종료되는 즉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발표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아닌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Forced Labor)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4%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다른 법률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 2026년 7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시간)- Section 301 추가관세 적용 개시

- 왜 Section 301인가?

Section 301은 미국 통상법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복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추가관세나 기타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Section 301은 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산업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불공정 행위를 대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기존 사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미국의 노동시장과 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새로운 Section 301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번 관세가 발표되었다. 즉,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문제를 넘어 노동권과 인권 문제가 새로운 통상규제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노동, 인권, 공급망 관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고] 美 IEEPA 상호관세는 끝났지만, Section 301 추가관세가 시작됐다 (2/3)

상세 내용

- 이번 조치는 얼마나 큰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적용 범위이다.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들 경제권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9.4%에 달한다. 이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했던 기존 Section 301 조치와 비교해도 훨씬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국가별 관세 구조는 크게 10%와 12.5%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영국 등에는 원칙적으로 10%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 호주 및 베트남을 비롯한 그 밖의 다수 조사 대상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12.5% 그룹에 포함되지만, 기존 관세에 12.5%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적용 가능한 일반관세(Column 1 Duty)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조정하는 별도의 관세 구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되며, 일반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과 스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모든 제품이 대상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외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는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은 대부분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과 그 파생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도 이번 Section 301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의약품, 민간항공기 및 관련 부품, 반도체, 목재, 원유와 천연가스, 인도적 구호물품 및 정보자료 등도 예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도 각 국가별로 별도의 품목 예외가 수백 페이지에 걸쳐 규정되어 있어 기업들은 단순히 국가별 세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이 예외 대상인지까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 제품 중 Annex I 및 Annex II (Part A)에 열거된 품목은 이번 Section 301 추가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IEEPA 상호관세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보면서 "이름만 바뀐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두 제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 (National Emergency)를 전제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반면 Section 301은 미국무역대표부의 공식 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되는 통상법상 절차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Section 301은 오랜 기간 미국 법원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 왔으며, 법적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ection 301이라는 통상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고] 美 IEEPA 상호관세는 끝났지만, Section 301 추가관세가 시작됐다 (3/3)

상세 내용

- 이번 조치의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히 새로운 관세가 추가된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강제노동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 탄소배출(Carbon Emissions), 인권(Human Rights), 공급망 투명성(Supply Chain Transparency)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소를 근거로 새로운 Section 301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관세는 이제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통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자사 제품이 새로운 Section 301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 예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Section 232 관세나 반덤핑관세(AD), 상계관세(CVD) 등 다른 무역구제조치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CBP는 이번 조치와 함께 새로운 Chapter 99 HTS 코드와 신고 순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수입업체와 Customs Broker는 ACE 신고 시스템도 이에 맞게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많은 기업들은 IEEPA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의 관세정책도 한동안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Section 301 조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공백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Section 301 체계로 빠르게 대체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과 공급망 책임을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공식화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미국 수출기업과 수입업체는 단순히 관세율을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망의 투명성, 원산지 관리, 강제노동 리스크, 그리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 Section 301 조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통상 컴플라이언스와 공급망 신뢰성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 선제적 관세리스크 차단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

CHECK POINT

- ✓ 연간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AEO 공인업체는 제외됩니다.
- ✓ 지정 신청은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확인서는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수입물품 검사가 축소·생략되고, 신고 오류를 정정해도 보정기간 내 보정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어 기업이 겪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 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 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매 과세연도 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의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 확인 결과 신고 오류가 발견되어 세액을 정정하게 되면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2027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 9.3일부터 드론·부품 등에 최대 100% 관세 부과, 한국산은 15% 부과 / 추가 확인 필요사항 대미 협의, 우리 업계 영향 등 면밀히 점검 추진

CHECK POINT

- ✓ 2026년 9월 3일부터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도킹스테이션 등에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 ✓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kg 이하 UAS에는 25%가 적용되고,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가 부과됩니다.
- ✓ 한국산은 핵심 부품·기술이 한국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美 백악관은 8.13일(목)(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❶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❷열화상 장비 탑재 UAS, ❸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❹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❺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 단, 美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 획득한 기업은 '27.2.9일부터 시행

다만,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產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產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美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 향후 상무장관은 핵심부품·기술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 수립 예정

우리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사우디 AEO MRA 발효, 대(對)사우디 수출 통관 혜택 시작 (1/2)

CHECK POINT

- ✓ 한-사우디 AEO MRA가 2026년 2월 20일 발효되어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혜택이 적용됩니다.
- ✓ 별도 신청 없이 사우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의 'Saudi AEO Number' 항목에 우리 기업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 AEO 공인 심사는 서류·현장심사 각 60일로 최장 180일이 걸리며,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상세 내용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 인증제도로써 동 자격을 취득한 업체에게는 수출입 통관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 기준(SAFE Framework)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92개국(26년 4월 기준) 시행 중이며, 법규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4개 분야를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AEO 인증은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AEO MRA(상호인정약정)라는 별도의 국가 간 협정이 필요하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4월부터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해 AEO MR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2023년 9월 리야드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최종 서명했고,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2026년 2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는 양국 관세당국이 이미 AEO 공인정보를 사전에 교환·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발효되어 한국 AEO 수출기업이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의 AEO 공인번호(AEO ID)를 통보하면, 사우디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의 'Saudi AEO Number' 항목에 이를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사우디 관세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번호를 사전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 확인한 뒤 검사 생략,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AEO 공인번호를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혜택이 즉시 적용되는 구조다.

- 현재 적용되는 혜택 범위

AEO MRA의 혜택은 통상 5가지로 구성된다. ① 검사율 축소 ② 우선통관 및 검사 ③ 서류심사 간소화 ④ 비상시 우선조치 ⑤ 세관연락관 지정. 이번 한-사우디 MRA는 이 중 ①검사율 축소, ②우선통관 2개 항목이 적용된다.

한국AEO진흥협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한국은 25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이 중 21개국은 전면이행(발효) 단계이고 우루과이·카자흐스탄·몽골·베트남 4개국은 발효 준비 중이다. MRA 혜택 범위는 국가별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향후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이 심화되면 서류간소화·연락관지정 등 추가 항목으로 혜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사우디 AEO MRA 발효, 대(對)사우디 수출 통관 혜택 시작 (2/2)

상세 내용

- AEO 공인 및 갱신 절차

9개업종(수출업체 · 수입업체 · 관세사 · 보세구역운영인 · 보세운송업자 · 하역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 · 선박회사 · 항공사)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앞서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요건은 관세법 제175조 해당 여부, 최근 2년 이

내 주요 관세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규준수도 점수, 재무건전성 등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관리책임자 인적사항명세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공인기준),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 및 증빙서류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세평가분류원과 한국AEO진흥협회가 60일 이내 서류심사를, 이어서 관세평가분류원 본부세관이 60일 이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업에 30일의 보완 기간이 주어지며, 두 단계를 모두 마친 기업은 관세청 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최종 공인 여부와 등급(A·AA·AAA)이 결정된다. 이 절차대로면 심사에만 최장 180일(6개월)이 걸리며, 신청 전 사전 진단과 서류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 AEO 심사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내부통제시스템 정비나 외부 컨설팅 등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바우처 사업, 발전사 동반성장사업(1800만~3500만원), 지역 테크노파크 혁신성장 바우처 사업(900만~1500만원), 항만공사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컨설팅·시설투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AEO진흥협회(070-4070-7210)에서 접수받고 있다.

- 시사점

2025년 6월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의 70.6%, 수입액의 71.4%가 AEO MR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관세청에 따르면 AEO 공인 수출입기업 317곳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2992억원, 기업당 평균 9억 4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 22억 6000만원, 중견기업 평균 8억 6000만원, 중소기업 평균 2억 3000만원 수준이었다. 상호인정 혜택으로 검사가 생략되면 컨테이너(1TEU)당 500~1,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한-사우디 MRA는 현재 검사를 축소와 우선통관 2개 항목만 적용되지만, 앞선 체결국 사례에 비춰보면 양국 교역 확대와 관세당국 간 협력 심화에 따라 서류간소화·세관연락관 지정 등으로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사우디 수출 비중이 있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이번 발효를 계기로 AEO 공인 취득을 검토해볼 만하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대만산 38.89%, 중국산 3.66~22.21% 잠정관세 부과 재경부 건의 / 中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개최

CHECK POINT

- ✓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8.89%, 중국 3개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66~22.2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되었습니다.
- ✓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비누·세제 제조, 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에 사용되는 품목입니다.
-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판정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0일(목), 제476차 무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1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건, 총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의 고체로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올해 3월 ㈜영진이 덤핑조사를 신청하였고,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대만 포모사, 총 4개사이다.

무역위원회는 본 건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는 것으로 긍정 판정하고, 본 조사 기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3개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66~22.21%, 대만 포모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38.89%의 잠정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 및 추가 자료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민원상담 사례집 개정

- 자주 묻는 민원 사례와 최신 질의·답변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 제고

CHECK POINT

- ✓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출고 시 최초 1회만 UDI-DI를 등록하면 됩니다.
- ✓ 공급내역 중복 보고를 막으려면 기존 자료를 삭제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 ✓ 사례집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899-9351)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이정림)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을 8월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제조·수입되는 의료기기에 표준코드를 생성 및 표시함

** 공급내역 보고대상: 3등급·4등급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영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에 개정·발간된 2종의 사례집은 ‘24년 제정 당시 수록된 민원 상담 사례에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 답변 사례를 추가해 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례집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을 출고할 때마다 모델명별 고유식별자(UDI-DI) 등의 의료기기 통합정보를 재등록해야 하는 지에 대해,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출고 시 최초 1회만 UDI-DI를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

또한, 종전에 보고한 공급내역 자료를 삭제하지 않아 동일한 자료가 중복 보고(업로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삭제한 후 보고하도록 안내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원상담 사례집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콜센터(☎1899-9351) 등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https://emedi.mfds.go.kr/udi>) > 이용안내 > 가이드라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안내

CHECK POINT

-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이 개정되어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성분 기재방법, 재발급 가능 여부, 반려 시 재신청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이 반영되었습니다.
-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위생증명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번 개정은 올해 5월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과 지방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사례 등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내용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기재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 등 민원인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이다.

또한 누리집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증명서 신청 단계별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민원인이 신청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민원인이 위생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K푸드 중국 수출길 더 넓어진다 (1/2)

- 기업 등록 간소화·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 K-푸드 규제외교 강화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기반 확대 지속 추진

CHECK POINT

- ✓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한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축산물 외 대부분 식품의 중국 등록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로 단축됩니다.
- ✓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을 충족한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 수산물 위생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전환되어 위·변조 방지와 통관 신속화가 기대됩니다.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PEC Customs-Business Dialogue)」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對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

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3개 협력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식품안전 협력을 확대하였다.

이는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성과이다.

양국 식품안전 규제기관의 서명으로 협력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어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K푸드 중국 수출길 더 넓어진다 (2/2)

상세 내용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동 협력 사항에 대해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향후 고기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될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 도입>

양국은 그간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전자증명서) 양국 정부가 시스템연계(interface)하여 위생증명서의 증명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 및 디지털 인증으로 보안강화(CODEX, WOH 등 국제기구 권고)

* 종이·우편비용 연간 약 30억원 절감(DHL 우편비용 1건당 80,000원×약 3.7만건)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 제출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부담이었다”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기업 등록 간소화 및 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1/2)

- 관세청,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원천 차단 ...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 마련

CHECK POINT

- ✓ 8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시범운영되며 거래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거나 8월 28일 이후 신규 발급·정보 변경 시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 ✓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관리와 전용 수입신고서가 신설되어 통관데이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상세 내용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하 '전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8월 28일(금)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구매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7년 생일에 만료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고 주문한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8월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원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2/2)

상세 내용

둘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판매·중개·배송)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으며,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 및 통관목록을 신설해 정확한 통관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선별·검사하게 된다.

셋째,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발급·갱신·해지)하고,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 및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8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 후 연내 정식 개통을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관은 마약, 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N차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1/2)

- 석유화학 원료(콘덴세이트) 수급 빨라지고 수입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 / 말레이 당국과 공조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과 비중동권 공급망 다변화 촉진

CHECK POINT

- ✓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이 184일에서 45일로 139일(약 76%) 단축되었습니다.
- ✓ 5월 수입분부터 적용되어 관세 환급금의 적기 회수와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 ✓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필수 기재사항에 한정한 수정요청, 초안 증명서 수신 즉시 피드백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관세청은 8월 25일(화) 서울세관에서 국내 석유화학 3사*,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와 4월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화토탈에너지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HD현대케미칼(주)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이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최근 2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84일), 미국(72일), 호주(56일) 등 다른 수입국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약 6개월)이 소요되어 수입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발급 지연의 주된 요인은 한국 수입자와 싱가포르 중개상, 말레이시아 수출자가 얽힌 복잡한 3국 간 거래 구조와 수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 특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수입 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자유무역협정(FTA) 사후 적용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원유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다변화 지원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와 15회에 걸친 양국 간 실무협의를 6회에 걸친 국내 수입업체와의 개선 점검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검증 기관

우선, 양국 간 체결한 원산지검증 협력체계(MOU)를 기반으로 투자통상산업부(MITI)를 통해 말레이시아 석유·가스를 총괄하는 국영기업(PETRONAS)이 현지 생산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신청하도록 지도·도려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는 계약부터 원산지증명서 수령까지 전 과정 진단을 통하여 ▲수입 즉시 발급 요청 ▲품명 등 필수 기재사항에 한정한 수정요청 ▲초안 증명서 수신 즉시 신속한 피드백 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도 하였다

관세청,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2/2)

상세 내용

그 결과, 5월 수입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184일에서 45일로 139일(약 76%)이나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업계는 관세 환급금을 적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유 수급 일정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화학산업협회가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관세청 역시 적극 협조해 준 말레이시아 당국을 대신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대폭 빨라져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였고, 비중동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반겼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원유 수급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저해하는 현장 무역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과 다변화 지원 TF」를 구성하여 원유와 관련 ▲한-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입증절차 간소화 ▲호주 콘덴세이트 신속 품목분류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방법 개선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232조 추가 조치…국가안보 앞세워 수입규제 강화 (1/2)

CHECK POINT

- ✓ 미국은 수입 1차 알루미늄에 50%의 제232조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미국 내 제련시설에 투자해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물량에 절반인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 ✓ 관세 혜택은 조건부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 국가안보 핵심 소재 알루미늄 공급망 재편 추진

미국 정부는 알루미늄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로 보고 있다. 알루미늄은 군용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등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력망,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다. 특히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추출한 뒤 전기분해를 통해 최초로 생산하는 1차 알루미늄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생산 기반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높은 전력비와 해외 저가 제품 유입 등으로 미국 내 제련소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생산 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알루미늄협회(The Aluminum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동 중인 1차 알루미늄 제련소는 2000년 24개에서 현재 4개로 감소했으며 미국 내 산업 알루미늄 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수요가 국내 제련시설의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상황이 국방산업과 핵심 제조업의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련시설 확충과 생산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관세에서 투자 인센티브로…미국, 알루미늄 산업 육성 전략 전환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정책을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 20일 백악관은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를 신설하거나 현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형 인센티브 프로그램(Investment Incentive Program)'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기존 알루미늄 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기반 확충과 공급망의 온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평가된다.

미국, 알루미늄 232조 추가 조치…국가안보 앞세워 수입규제 강화 (2/2)

상세 내용

현재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1차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무부의 투자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시설의 완공 후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1차 알루미늄 수입 물량에 기존 관세율의 절반인 2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신규 제련소 건설에 통상 2~4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기업이 공장 완공 전까지 필요한 원재료를 높은 관세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국내 공급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투자기업 대상 관세 인센티브 적용 요건은?

이번 인센티브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련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및 현대화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은 미국 상무부에 온쇼어링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투자 약속과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상무부는 투자 규모, 생산능력,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한해 향후 해당 시설의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물량만큼 1차 알루미늄을 기존 제232조 관세율의 절반인 25%의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은 미국 내 신규 생산능력 확보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인센티브로 운영된다. 투자기업은 승인된 일정에 따라 제련시설 건설 또는 증설을 추진해야 하며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 시사점

이번 조치는 기존 제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통상 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알루미늄 관련 기업은 기존의 수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CHECK POINT

- ✓ 한-영 FTA 개선 협정문 영문본·한글본 초안이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개되고 국민의견을 접수합니다.
- ✓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의견 검토 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영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본 자료는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 한주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CONTACT

CCB

하두식 부대표
dsha@hjcustoms.co.kr

COB

안만복 부대표
mbahn@hjcustoms.co.kr

CRB

박주경 부대표
jpark@hjcustoms.co.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